○○○씨 세보 범례(보규)(○○○氏世譜凡例(譜規))

이 을유보(乙酉譜)는 二〇〇〇년 五월 二十일「〇〇〇씨 세보 전산화편찬위원회」에서 숙의 결정된 다음 범례(凡例=譜規)에 따라 편찬되었음.

- 1. 이 세보는 一九八三년 편찬 발간한 임술보(壬戌譜)의 편찬 정신을 계승하여 관존민비 (官尊民卑) 남녀차별(男女差別)적서(嫡庶)구별 및 순한문판(純漢文版) 편집 등 구래 (舊來)의 누습(陋習)을 지양하여 민주주의 원칙과 자라나는 후손들을 위하여 이해하 기 쉽도록 한글 족보로 편찬하는 동시에 시대조류에 맞추어 전산화(電算化)를 도모함으로써 자손들로 하여금 족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보다 현대적이고도 찾아보기 쉽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.
- 2. 이 세보는 우리의 최초보(最初譜)인 임오보(壬午譜=1762년 발간)를 비롯하여 갑자보 (甲子譜=1804년 발간) 을사보(乙巳譜=1845년 발간) 갑술보(甲戌譜= 1874년 발간) 무오보(戊午譜=1918년발간) 등 구보를 기본으로 편찬 발간한 임술보(壬戌譜=1982)의 편찬규칙을 준용(準用)하고 그 후 발간된 각 문중파보(門中派譜)도 참고하여 현존 자손들을 가능한 한 누락자 없이 수록하는데 최선을 다한다.
- 3. 이 세보는 5권 1질로 하되 5권은 보록총색인부(譜錄總索引簿)와 족보편람(族譜便覽) 및 사례편람(四禮便覽)·진류편람(晋柳便覽)을 묶어서 부록으로 발간한다.
 - ① 수권(首卷=卷一) 전반부에는 종훈(宗訓) 종장(宗章) 및 진강사(晉康祠)를 비롯한 현조(顯祖)의 영정(影幀) 단묘(壇墓) 사우(祠宇) 서원(書院) 비갈(碑碣) 재실(齋室) 등의 사진을 봉재(奉載)하고 본보의 발간사 서문 및 역대 구보의 서문(序文) 발문(跋文) 보계변증기사(譜系辯證記事)그리고 명조(名祖)나 파조(派祖)의 실기(實記) 행장(行狀) 비명(碑銘) 등의 원문과 번역문을 병재(倂載)하고 항렬도(行列圖)와 범례(凡例=譜規) 상대분파도(上代分派圖)와 현재까지의 계보도(系譜圖) 겸색인표를 수록한다.
 - ② 권一 후반부에는 시조(始祖)로부터 19世까지의 상대보록(上代譜錄)을 봉재하고.
 - ③ 권二에는 양화공파(良和公派)의 19世부터 31世이하 까지 수록하였음.
 - ④ 권三에는 총랑공파(摠郞公派)의 19世부터 31世이하 까지 수록하였음.
 - ⑤ 권四에는 대사성공파와 판서공파의 25世부터 31世 및 31世 이하 분까지 수록하고 말미(末尾)에 본보 보발(譜跋=편집후기) 및 본 편찬위원회 임원록(任員錄)을 붙인다.
- 4. 열조(列祖)에 관하여 기간보서(旣刊譜書)에 미기(未記) 또는 오기(誤記)사항이 있을 때에는 분명한 고거(考據)가 있는 한 편찬회의의 의결을 거쳐 차제에 보완 또는 시정한다.
- 5. 충효(忠孝) 학행(學行)등 행적이 현저한 분들의 유사(遺事)나 행장(行狀) 비문(碑文) 등은 세보에는 약기(略記)하고 상세한 것은 1993년 대종회에서 발간한「○○○씨문 헌총집」수록면(收錄面)을 첨기하여 참고토록 한다.
- 6. 생졸(生卒) 기타 년도는 구보대로 간지(干支)를 이기(移記)하되 서기년대를 환산병기 (倂記)하여 숫자는 모두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. 단 오기(誤記)가 분명한 것은 차제에 바로잡는다.
- 7. 모든 휘(諱)나 이름 밑에 음을 달아 주고 행적(行蹟)등은 번역문만 붙이고 원문은 지

면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생략한다.

- 8. 배우자(配偶者=처)는「배(配)」로 통일하고 사조(四祖)기입 원칙을 답습하되 친가에 특기할 만한 인물이 있으면 첨기(添記)토록 한다.
- 9. 출가녀의 기록은 임술보와 같이 구래(舊來)의 여서위주(女壻爲主)에서 본인위주로 바 꾸어 출가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약력 경력 등을 기입하고 남편(夫)은 방서(傍書)로 본관, 성명, 학력 경력 및 시부명(媤父名)과 자녀명을 첨기토록 한다.
- 10. 기재순은 선남후녀(先男後女)원칙을 취하고 무오보(戊午譜)이후의 적서(嫡庶) 기입순 은 당사자의 뜻에 따른다.
- 11. 20세전 요절자(夭折者)는 등재치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수 록할 수도 있다.
- 12. 사망은 졸(卒)로 통일하고 七十 전 졸은 향년(享年)으로 七十 이상은 수(壽)로 상대 (上代)는 표기하였으나 생졸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년수를 생략하였음.
- 13. 묘소의 좌향(坐向)은 편의상 기본방향인 8방위(子坐 : 정남향 午坐 : 정북향 卯坐 : 정서향 酉坐: 정동향 艮坐: 정서남향 巽坐: 정서북향 乾坐: 정동남향 坤坐: 정동북향)만 풀이하고 기타 좌향은 부록편의 방위도를 참조토록 한다.
- 14. 계통 미상자를 입보시키고자 할 때에는 양자(養子)로 표기하되 반드시 해당 문중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편찬회의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.
- 15. 학력은 수단대로 기재하되 최종학력과 취득학위 및 고시합격자는 병기해 준다.
- 16. 경력은 관민 평등원칙에 따라 수단내용을 참작 주요부분만 적기(摘記)한다.
- 17. 보록 중 입출계자(入出系者)는 그 생양가(生養家)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색 인면을 첨기한다.
- 18. 최하단 기두(起頭)연결색인은 「견하(見下)・견상(見上)-○○○면」으로 명기한다. (견하: 아랫代보기, 견상: 윗代 보기)
- 19. 六・二五사변 표시는 「경인란(庚寅亂)」으로 하지 말고「6・25 사변」으로 통일한다.
- 20. 보록 편집체제는 11字高 10字平 8分間 횡간보(橫間譜)를 원칙으로 하고 첩수(疊數= 段數)는 각 권 모두 7단으로 통일한다.
- 21. 보록의 서체(書體)는 휘자(諱字)는 견명조체 5호로 배(配)는 7호로 기타는 신명조체 9호로 하되 문헌편 제 기사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.
- 22. 전산화편찬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이고도 편리한 DB구축을 위해 프로그램 선택에 만 전을 기해야 하며 그 최종선택은 편찬회의에서 결정한다.
- 23 본보에서 사용하는 약물(約物)은 다음과 같다.

① 생 : 년월일

② 화 : 학력

③ ② : 결혼년월일

④ 경 : 경력

⑤ ③ : 직업

⑥ & : 포상

⑦ 저 : 저서

⑧ 졸 : 사망년월일⑨ 묘 : 묘소

10 配: 対

⑪ ② : 장인

12 조 : 장조부

⅓ 증 : 장증조부

⑭ 외 : 처외조부

⑮ 失 : 남편

16 ② : 시부

☞ 子: 출가녀아들 ⑱ 毋: 출가녀딸

24. 보책 규격은 4×6배판 양장으로 사철제본하고 용지는 50g 코트지로 하되 권별 질별 케이스들이로 한다.

- 25. 책 표지는 남청색 포(布) 크로스 1천 8백 파운드로 하고 제자(題字)는 금박(金箔)으로 한다.
- 26. 영정(影幀) 단묘(壇墓) 사우(祠字) 등의 사진 봉재는 각 파조(派祖)와 참상관(參上官) 이 상의 관력(官歷) 학덕(學德)이 높은 명조는 가능한 한 수집하여 천연색으로 수록한다.
- 27. 묘도(墓圖=山圖)는 위 사진에 소재지가 명기됨으로 금번 보책에서는 생략한다.
- 28. 항열도(行列圖)는 임술보 게재도를 그대로 전재한다.
- 29. 부록 족보편람은 족보 봉심(奉審)에 참고가 될 필사항 및 1996년 대종회 발간 진류 편람(晉柳便覽)을 한글로 별도 편책한다.
- 30. 보책발간부수는 3천 5백질 CD 롬은 4천매 제작을 목표로 하되 주문량을 감안 적의 조정한다.
- 31. 본 세보는 을유보(乙酉譜)라 칭한다.

세보편찬위원회

메모				